

한국인의 인권의식

-언론의 침해와 관련하여-

양승두
연세대 법대교수

우리의 전통적 의식의 가장 현저한 징후는 권리, 의무 의식이 박약하고 법적 분쟁 해결과정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1. 처음에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초는 언론의 자유 보장에 있으며, 「신문없는 정부보다는 정부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는 진부한 것이 될 정도로 흔히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제도이며 또 국민의 또 하나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보장을 충족시키는 전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여론은 항상 사형이며, 사형은 항상 오락이다. 비록 피스톨을 사용하는 대신 신문 기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라는 말도 있다. 즉, 신문 기사를 통한 보도는 자칫 그릇된 경우에는 피스톨을 사용하는 사형의 경우처럼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일본의 어떤 은행 지점장의 두살된 딸이 변사하였다. 경찰의 발표는 그 어린이가 아사하였으며 어린이 침대(baby bed)에 갇혀 있었다고 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간지는 그 지점장을 「비정한 아버지」로 보도하였다.

그 아버지는 형사공판의 선고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공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그 어린이는 중병의 신체장애자였기 때문에 항상 침대에 누워있었으며 그 지점장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아서 그 어린 아기를 부친이 굶겨 죽였다고 신문은 발표하였지만 이것은 그 유아에게 거식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이 불충분한 발표를 하였고, 이런 경우에 신문은 경찰수사관의 발표 이상으로 훌륭한 뉴스원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발표를 믿고 제 1 보를 썼다고 하는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경찰관의 발표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문은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경찰발표를 관계인에게 다시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는 없었을런지 모른다. 따라서 신문을 비난할 수 만도 없을런지도 모른다.

두번째 사건을 보기로 한다. 전 대통령의 미망인이며 개가한, 저명인사의 부인의 나신을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흥미본위의 오락지에 게재하려고 한 사건이다.

물론 그 흥미를 본위로 하는 오락지의 독자는 이런 류의 사진, 즉, 저명인사의 나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진을 즐길 호기심에 가득 차 있을 것이며 이러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마다 더욱 많은 부류의 잡지는 호기심이 많은 독자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 그 잡지사는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미국사건을 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신장이 한창인 때 미국남부의 흑인단체가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에 전면유료광고를 『저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들어라』는 표제로 실었는데, 이 유료광고문에서 비록 특정인의 이름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관직을 기재함으로써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정인이 테러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비난하였다.

이 특정인은 이 광고문이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동흑인단체 임원 천명과 「뉴욕타임즈」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대법원에서까지도 50 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한 사건을 보기로 한다.

지방의 두 일간지가 각각 『난행 당한 여고생 4 층 옥상서 투신』 『불량배에 봉욕, 비관한 여고생 옥상에서 투신 중태』라는 표제 밑에 보도한 내용에서 한 신문은 그 여고생의 학교, 소재지, 동명과 학년 및 성을 밝혔는데, 그 내용에 있어 모두 「욕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경제조사나 병원의 진단 결과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한 신문은 경제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여학생은 불량배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신문에 의하여 당하지도 않은 봉욕을 당하였다고 잘못 보도됨으로써 어린 여학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으며, 또 부상이 치료된 후에 부끄러워 등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게재기사의 진위여하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의 기본적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고 그 취재에 있어서 만전의 주의를 경주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자칫 취재 · 보도에 있어서 신중성이 흠여되어 진실과 괴리가 있는 보도가 있다든지 혹은 사실을 과장하여 보도한다는 것은 추구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운 -때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빚어내게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인 여러 제도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제도 그 자체의 이념은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즉,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일반대중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방패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언론은 공기라고 일컬어지며 신문은 사회의 목탁이라고 신뢰되고 있으며 또 기자는 무관의 제왕이라고 존중되는 것은 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다 완전히,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언론의 자유라는 제도 뒤에 서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며, 외설로써 사회적 이익을 침해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시민을 선동할 수도 없을 것이다.

II. 우리나라의 인권의식

그렇다면 언론의 횡포 -의식적인 것이든, 또는 무의식적인 것이든- 로 부터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권리, 즉 인권을 우리들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또는 언론의 횡포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 당하였을 때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법의식 · 권리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의식 · 권리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갑오경장이 있던 해이다. 갑오변혁의 개화와 변란의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하여 조선왕조는 내정개혁을 시작하였고 이 일환으로 조선왕조의 법률제도를 근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고종 32년(1895년)에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 공포되었으며 광식 9년(1905년)에는 서구적인 근대적 의미의 형법대전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사업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자의 손에 의하여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법제도의 근대화 과정이었기에 비록 그 내용의 큰 줄거리는 서구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속에 토착화되기는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법 · 권리제도를 탄생케 한 서구사회와 20세기 초의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자체가 판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서구사회는 횡적인 수평적 사회였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사회는 종적사회라고도 말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대 시민법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개념인 「권리」 「의무」 「계약」 또는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서구 사회의 법질서에서는 당연한 개념이었고 또 규범이었으나, 종적사회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생소한 개념으로서 쉽게 정착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소감은 서구의 법제도를 도입한 지 거의 일세기에 이르는 토착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몇 가지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전통적인 가치의식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의식의 가장 현저한 징후는 권리 · 의무의식이 박약하고 법적분쟁 해결 과정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교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치수단, 분쟁 해결 방법, 권리의 보호·보장으로서 법기능은 항상 예·도덕적 윤리규범보다는 차선의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결정의 요인으로서의 법-넓은 의미의 법제도 자체를 포함하여-은 무시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을 행위결정의 좌표로서 삼는 사람은 군자가 아닌 소인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또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법없이 살 수 있는, 즉, 유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쫓는 사람이 보다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이다.

법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법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주장에 전체표본의 61.9%가 찬성하고 있어서 1979년 조사 당시에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의식은 우려의 의식 속에 길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같은 조사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해보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을 때 느끼는 심정에 관하여 전체 표본의 62.2%가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고 「아무렇지도 않다」든가 또는 「좋다」는 반응을 보인 표본수는 각각 전체의 10.7%, 2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법적분쟁 해결방법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류의 사람이 법의 분쟁 해결수단의 효용성을 긍정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드리는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아직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 의식은 법의 존재이유에 대하여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게 한다.

「법은 누구를 위하여 제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다수의 표본은 「국민을 위하여」(61.5%) 「나라를 위하여」(61.8%) 등의 응답을 하고 있으나 또 일부의 표본은 「권세 있는 사람을 위하여」(10.3%)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법을 치자의 피치자에 대한 지배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법은 항상 「위에서 만들어 아래 사람들이 지키도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법은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종적인 사회에서의 강력한 사회규범인 삼강오륜의 규범은 일종의 자연법적 질서라고 이해되었고 이러한 권위주의적 질서 속에서는 법을 통하여 신분이 낮은 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받기가 힘들며, 또 이렇게 보장을 받으려는 또 보장을 하려는 의식도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법제도가 운영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전술한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우리들의 인권의식은 아직도 전통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밤중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영장이 없으면 안간다」는 법적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전체

표본의 19.3%에 불과하며 「간다」가 32.7%, 「잘못한 일이 없으면 안간다」가 47.8%이다. 이 경우 「잘못한 일이 없으면 안간다」는 반응은 연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이 강력하게 잘못된 일이 있다고 주장하면 결국은 동행하게 되는 심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근 80%의 표본은 밤중에 자고 있는 때에 경찰관이 연행하려고 한다면 연행되는 그런 의식을 가진 표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양에 있어서는 법을 기피하고 법에 대하여 외포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법에 대하여서 항상 자비스러운 적용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서구인의 법에 대한 태도는 부친대용(father-substitute)인 반면에 동양인의 태도는 모친대용(mother-substitute) 이어서, 서구인은 법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틀림없이 결정하는 준칙이기 때문에 법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완전무흡성, 권위성, 확고부동성, 영속성,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마치 어린이가 자기의 부친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와 비슷하나,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법은 항상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과 눈물을 가진 융통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을 기대하는, 즉 어린이가 어머니에 대하여 가지는 심리와 같은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결정에 있어서 법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분쟁의 사법적 해결(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자연히 기피하며 비법률적인 즉,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빌린다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한다. 그리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인자하고 관용성 있게 적용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술한 조사에 있어서 「조그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일일이 드러내어 법대로 벌을 받게 하는 경찰관과 웬만한 일은 되도록 보아주려는 경찰관」의 두 다른 성격을 가진 경찰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훌륭한」 경찰관이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60.5%의 표본이 「잘 보아주는 경찰관」을 택하였고 불과 24.7%의 표본만이 「법대로 하는 경찰관」을 택하였다.

금전보상보다는 인격의 완전성 보상 바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의식에 있어서도 투철하지 못하다. 대개의 서구인이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곧 연상하는 것이 손해배상임에 반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해배상이라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오히려 인격의 완전성을 전보하여주는 방법, 이를테면, 사과, 사죄 등 피해자의 손상된 체면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을 오히려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감성적인 대립의

경우가 아니하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의 폭넓은 관용심에서 나온 우호성적인 이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타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조사에서 「버스 사고에 의한 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을 「법대로 하겠다」는 표본은 46.4%이며 「타협한다」는 표본은 48.8%이었다. 치료비 등의 구체적인 금전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타협하겠다」는 표본이 48.8%가 있다는 것은 그 밖의 정신적 피해가 관련되어있는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비율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전적인 손해배상 이외의 손해배상 방법을 택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권리의식은 전술한 조사의 10년 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비하면 국민전체의 법의식·권리의식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법의식·권리의식은 전통적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 전 구제기구

이상에서 법·권리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고찰하였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언론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인권의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언론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인권도 결국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며, 이 인권도 법리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언론기관을 국민보다는 우위에 있는 제도(institution)라고 생각하며, 언론기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언론기관의 기사·방송을 진실이라고 신뢰하고, 언론기관의 보도·방송의 부당·위법한 행위-보도·방송 등- 등에 대하여 법적인 배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설사 언론에 의한 침해가 있어서 이를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다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보다는 피해자의 체면, 피해자의 인격의 완전성을 전보하는 구제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 5 공화국의 수립과 더불어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탄생하였다.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구제를 제 1 차적으로 다루는 재판전구제기구로서 중재가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의식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당한 분쟁해결의

제 1 차 기구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달성할 것으로 이해된다. 그 까닭은 중재위원회 위원이 사법부의 법관만으로서만 구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법 · 법기관 기피 심리의 대상이 될 염려가 없는 반면에 중재위원의 중심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 보호에 소홀함이 있을 수 없는 장점을 지녔다고 보며, 또 이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중재결정이 언론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 받을 피해자의 체면, 인격의 완전성을 전보 하는 방법, 즉 정정기사의 게재, 반론의 인용 등을 중심으로 하고 손해배상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법적인 구제인 소송의 전심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신속한 구제, 비용이 경미한 구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1 년 5 월부터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활동의 결과를 분석하면 매우 흥미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1981 년 5 월부터 동년말까지의 주재신청건수는 모두 서울 중재부 20 건, 부산 중재부 2 건, 대구 중재부와 충북중재부가 각각 1 건으로 24 건에 이르며 피신청매체수는 44 개사이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의 법적 또는 준법적 권리 구제과정을 기피하는 의식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수의 일간지, 방송국 등 언론기관이 있으나 실제로 그 언론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제소한 사건의 총 수는 7 개월 반 동안 24 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총 수 24 개 사건 중에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사례가 2 건이며 일부 각하가 1 건이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 그에 관한 법규정이 아직도 일반 국민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세째로 피신청매체사 총 44 개사 중에서 기각, 각하, 중재기일 전 취하를 제외하고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33 개사 중에서 18 개사만이 출석에 응함으로써 출석률이 54.5%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도 언론사측이 피해자의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켜 주려는 책임의식이 미흡하다고 하겠다.

중재신청이 아직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볼 때 피해자측이 침해된 인권을 구제 받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소기의 응답을 받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피해의식에 젖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방관 내지 체념에 빠지는 소극적 태도에 머물러 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은 앞의 조사에서도 비춰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버스운전수나 트럭운전수가 잘못하여 선생님을 들이받아 많이 다치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해자와 타협하리라는 응답이 48.8%,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보겠다는 46.4 %,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든가 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각각 1.4%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에 대한 국가보상청구권에 관한 의식으로 볼 때, 「큰길에 있는 다리가 불완전하여 선생님이 건너가시는 도중에 빠져서 중상을 입으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소하여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가 44.3%이고, 내 운수가 나빠서 「내가 잘못하여 빠져서 부상을 당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고 체념하는 쪽이 30.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일반 사인의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언론이 비록 국가기관은 아닐지라도 공기관으로서 언론기관이라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쉽게 능동적으로 권리를 다투려는 의식이 약하므로 그 손해전보책으로서 정정보도를 중재신청한다는 일은 아직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서서히 변화가 오리라 예상

이렇게 중재를 신청한 사건의 몇 가지 면을 살펴볼 때에, 첫째로 중재신청사건수에 있어서 외국의 경우에는 일년에 400 내지 600 건에 이르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의 총 1 할에 미치는 정도이며, 둘째로 중재를 신청한 사건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취 개인적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일천한 까닭도 있으므로 앞으로 그 신청사건수나 내용에는 서서히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언론에 의한 침해형태로는 프라이버시인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신용이 중시되므로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언론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례도 점증할 것이므로 신용훼손도 침해의 한 형태로 등장하여 중재신청의 일부를 이룰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법이나 사법기관에 대하여 외포심을 보통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준법정신도 투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발 내지 고소의 정신에 있어서도 왕성하지 못하여 박약하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는 앞의 같은 조사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고발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발한다」가 55.0%이고, 「고발하기 어렵다」가 27.2%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일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집에 가서 도둑질을 할 경우에 고발을 하겠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고발한다」는 16.8%이고, 「고발하기 어렵다」는 67.0%이고 보면 사회규범으로서 법 이전에 윤리의식이 강하게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집행기관에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행위가 바로 고발이라는 행위이고 보니 개인이 법이나 법집행기관인 사법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뜻하므로 전통적인 법기피의식이 아직도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위하여 도둑질을 한 사람의 처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가 9.6%로 나타난 의식태도와는 꺾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비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보자고 한다면 그 기분은?」이라는 질문에 「나쁘다」가 62.2%, 「아무렇지 않다」가 10.7%인데 비하여 「좋다」는 22.3%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에 분쟁에 대하여 법적 해결방법의 효용성에 긍정하여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조정기관이나 판정기관에 사건의 처리를 맡기려는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가 다양해졌다

이것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상당히 복잡미묘하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라는 테두리가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또 국민이 사생활이나 명예·신용 등 인격이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발달 내지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약한 개인이 거대하고 막강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여 중재를 요청한다는 그런 류의 배전행위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아예 체념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의식상으로 보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비합법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즉 1977년의 「국가·사회 안보관 실태조사분석」이라는 한 조사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제대로 잘 안될 경우에 「비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목표달성을 추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11.80%, 대학생의 경우 8.4%, 산업근로청소년의 경우 11.8%로, 「합법적 방법으로 목표달성을 추구하겠다」는 각

71.50%, 82.7%, 77.91%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 내지 사법기관 기피의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발전하고 강화됨으로 해서 사건의 해결을 합리적 나아가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 보려는 의식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여건만 조성된다면 이러한 의식이 현재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의식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침해받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언론과의 인권 사이에는 상반된 면이 있기도 하다. 즉 전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적 측면에서만 다뤄왔던 국민의 알 권리는 이제는 인격형성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송을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지식과 사상을 찾고 받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제 19 조에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968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가 주관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에 의하여 채택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선언」의 제 8 조에는 『삶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우리들은 사회질서와 안정(경제질서 침략과 붕괴의 형태 및 교통규칙에 대한 통제, 건강에 대한 최소한 수준의 조정)이라는 이익을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다소의 규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는 정치적·문화적 지배의 힘 또는 도구로서 간주될 수 없다. 여기,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전세계를 통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기타 창조적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적을 가능한 한 넓게 전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개인은 이러한 업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용자로서 또는 참고자로서 개인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 등)출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권위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라고 명문화한데서도 이 권리는 주로 국가에 대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면이 강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대하여도 인정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권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상의 권리로서도 인정되어 있으며, 유럽인권협정 등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사생활이나 명예, 신용 등이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자유와 형량상 문제되고 있다. 비록 알린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 범죄의 교사나 선동, 허위, 오류의 보도 등으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타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상충하여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럴 때에 구제하기 위한 제반의 여건과 방법이 갖춰져야 한다.

Ⅲ. 맺는말

이렇게 살펴볼 때에 국민이 언론을 이해하여 키워가므로 언론창달이 이뤄지고 언론은 국민에 대하여 목탁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다는 입장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이 언론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언론기관은 장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으며, 영리에서 밀려진다는 것은 바로 폐간으로 통하는 길이기도 함을 요즈음 몇몇 세계의 유력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자기존립내지 발전의 구실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피해자는 구제책을 찾고 또 나아가서는 언론에 대한 처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국민의 인권의식의 수준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고 또 인권의식이 비록 높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는 커녕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투려고 하는 의식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아는 교육환경도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이 요구되어진다.

첫째로 언론기관 자체가 체크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물론 현재에도 몇 단계를 거치면서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를 보다 더 올바른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 기구는 법률전문가(법조계, 학계 등)와 언론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타당하리라고 본다. 여기의 법률전문가는 객관적이고 법률적 측면에서, 언론전문가는 자칫 위축되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사명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율통제 측면에서 구성원으로서 요구되어진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언론기관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기사나 보도·방송(방영)을 자제하도록 조심을 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둘째로 언론중재기구의 설치와 그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제까지 자율기관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유일하게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하나의 법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기본법을 모성으로 하여 설치되어 언론에 의하여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 중재하게 되어있다. 중재기구로써 중재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줄어들어서도 안되며, 또 중재라는 공적 임무를 구실로 일방적 주문생산을 해서도 안된다. 이니셔티브를 잡고 자주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또 중재위에 대한 홍보활동을 넓게 철저히 하여 언론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제소를 하게 하여, 방법과 절차를 몰라 (더욱이 법기피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관장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인권의식으로는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투쟁 (법적 분쟁해결방법)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의 몇 가지 사건(화장품대리점 여주인 살해사건·박모양 여대생 살해사건·윤노파 살해사건 등)에서 크게 문제되는 바는 이른바 「신문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텔레비전에서 피의자 사진을 찍는 것으로 해서 성명권이나 초상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사회시대에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허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언론에 의한 인권의 침해는 그 침해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구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침해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인 전체의 책임이다.

□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수학, 연세대학교졸업 (법학박사)

□ 저술 : 「미국헌법제도론」(역서), 「영국의 위임입법 통제에 관한 연구」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